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남인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518 발의연월일: 2024. 12. 16.

발 의 자:남인순・이수진・윤종군

민형배 · 박희승 · 서미화

손명수 · 모경종 · 김남희

김 윤 • 이해식 • 박주민
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현재 정신질환자는 복지서비스 지원에서 배제되어 지역사회에서 일상을 영위하고 치료받으며 살아갈 기회를 얻기보다 정신의료기관 강제입원·입소 과정을 반복하고 있고, 그 가족은 정신질환자를 돌보느라 큰 부담을 가지고 있음.

이에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을 강화하여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동료지원인이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ㆍ치료를 위한 교육ㆍ상

- 담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1조제3항 신설).
- 나.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질환자와 동료지원인 연계 등의 업무를 수 행하는 동료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5조의5 신설).
- 다. 정신질환자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 도록 함(안 제33조의2 신설).
- 라. 정신질환자를 위한 다양한 직업프로그램 및 직종을 개발, 고용지 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, 정신질환자를 고용하는 기업 등에 급 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4조).
- 마. 정신질환자의 문화·예술·여가·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 런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6조제2항 신설).
- 바. 정신질환자에게 자립생활정착금 지원, 임차자금 지원, 독립적인 주 거생활유지, 단기거주 주거지원 등 지역사회 복귀 및 거주를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함(안 제37조).
- 사. 정신질환자에게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7조 의2 신설).
- 아. 정신질환자의 가족에게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, 가족 상담, 가족 돌봄 및 휴식, 가족단체 지원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8조).

법률 제 호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3항"을 "제4항"으로 한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동료지원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법률 제19902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에 제1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5(동료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료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- 1. 동료지원인 양성 및 동료간 상담 등 서비스 연계
- 2.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 해소 및 권익 옹호 사업
- 3.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적 생활을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 연계

- 4. 정신질환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심리회복 지원
- 5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제1항에 따른 동료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인력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3조의2(개인별지원계획수립) ① 정신질환자 또는 그 가족은 해당 정신질환자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 록 개인별 복지서비스에 관한 제공계획(이하 "개인별지원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줄 것을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 수·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.
 - 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개인별지 원계획의 신청을 받는 경우 대상자 선정 여부 및 복지서비스 내용 을 결정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하여야 한다.
 - ③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받은 경우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복지서비스의 범위에서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지서비스의 내용, 방법 등이 포함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해당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.
 -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복지서비스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의 승인을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

- 수·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, 개인별지원계획은 특별자치시장·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적합성 심사를 거쳐 승인을 얻은 경우 효력을 가진다.
- 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적합성 심사 결과를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⑥ 개인별지원계획을 통보받은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은 개인별지원 계획의 변경·수정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.
- ⑦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·수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에 따른다.
-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의 의뢰 방법 및 절차, 수립 방법 및 내용, 승인통보·신청·변경·수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34조(고용지원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, 창업지원, 취업알선, 고용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 런, 직업지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 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가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프로그램 및 직종을 개발하여야 한다.

-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정신질환자에게 심층상 담을 통한 직업경로 설계, 직장체험,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고용지 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미취업 정신질환자의 직업지도 및 고용 촉진을 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.
- ⑥ 기업, 정신건강증진시설·정신건강복지센터, 동료지원센터, 동료지원쉼터 등에서 정신질환자를 고용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① 그 밖에 고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. 제3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문화·예술·여가·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37조(지역사회 복귀 및 거주를 위한 통합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퇴원 등의 여부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, 퇴원등이 예상되는 정신질환자 의 지역사회 복귀·거주와 치료·재활 등이 통합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에 복귀 또는 거주하는 정신질 환자에게 임대주택 지원, 자립생활정착금 지원, 임차자금지원, 단기

거주 주거지원, 지역사회 복지시설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자립적이고 안정적으로 복귀 또는 거주할 수 있도록 동료지원인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역사회 복귀 및 거주를 위한 통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37조의2(주간활동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주 간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주간활동서비스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- 제38조(가족 등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.
 - 1.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제 공 및 교육 지원
 - 2.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
 - 3. 가족 돌봄 및 휴식 지원
 - 4. 가족 자조모임 지원

- 5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질환자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지원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의 실시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·방법·절차, 제2항에 따른 위탁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11조(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 제11조(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 발견 등) ①·② (생 략) 발견 등) ① • ②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③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제2 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동료지원인이 참여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. ③ (생략) 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 ④ 제2항에 따른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 발견 · 치료를 위한 정신건강증 진사업의 범위, 대상 및 내용 등과 제3항에 따른 조기치료비 ----제4항---지원의 대상 및 내용 등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. 법률 제19902호 정신건강증진 및 법률 제19902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5조의5(동료지원센터의 설치 <신 설> ·운영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료지원센터를 설치 •운영할 수 있다.

 1. 동료지원인 양성 및 동료간

 상담 등 서비스 연계

- 2.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 해소 및 권익 옹호 사업
- 3. 정신잘환자의 지역사회 통합

 적 생활을 위한 다양한 정보

 제공 연계
- 4. 정신질환자의 일상생활을 돕 는 심리회복 지원
- 5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제1항에 따른 동료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인력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33조의2(개인별지원계획수립)
① 정신질환자 또는 그 가족은 해당 정신질환자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인별 복지서비스에 관한 제공계획(이하"개인별지원계획"이라 한다)을수립하여 줄 것을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.

<신 설>

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 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신청을 받는 경우 대상자 선정 여부 및 복 지서비스 내용을 결정하여 정 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개인 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하여 야 한다.

③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 받은 경우 제2항에 따라 결정 된 복지서비스의 범위에서 정 신질환자 및 그 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지서비스의 내용, 방법 등이 포함된 개인별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 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해당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. 다.

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복지서비스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의 승인 을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 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, 개인별지원

계획은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 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의 적합성 심사를 거쳐 승인을 얻은 경우 효력을 가진다.

- 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적합성 심사 결과를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⑥ 개인별지원계획을 통보받은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은 개인별 지원계획의 변경 · 수정을 정신 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.
- ⑦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・수 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 5항까지의 절차에 따른다.
-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 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의 의뢰 방법 및 절차, 수립 방법 및 내 용, 승인통보ㆍ신청ㆍ변경ㆍ수 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다.

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

제34조(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) 제34조(고용지원 등) ① 국가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 신질환자가 자신의 능력을 최

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 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 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,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 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 자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 업훈련, 직업지도 등을 지원하 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고용촉진 및 직업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.

- 록 일자리 창출, 창업지원, 취 업알선, 고용지원 등 고용촉진 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 자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 업훈련, 직업지도 등을 지원하 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.
 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 자가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 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프로그램 및 직종을 개발 하여야 한다.
 -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정신질환자에게 심층상담을 통한 직업경로 설 계, 직장체험, 직업능력개발훈 련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 공하여야 한다.
 -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미취업 정신질환자의 직업지도 및 고 용 촉진을 담당하는 업무를 담 당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.

제36조(문화·예술·여가·체육 활동 등 지원) (생 략)

<신 설>

제37조(지역사회 거주·치료·재활 등 통합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를 위하여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 신건강증진시설에서의 퇴원등 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재활 지원 등 지역사 ⑥ 기업, 정신건강증진시설·정신건강복지센터, 동료지원센터, 동료지원센터, 동료지원센터, 동료지원센터, 동료지원센터, 동료지원센터 등에서 정신질환자를 고용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① 그 밖에 고용지원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36조(문화·예술·여가·체육 활동 등 지원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 신질환자의 문화·예술·여가 ·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37조(지역사회 복귀 및 거주를 위한 통합 지원) ①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증진시 설에 입원등을 하고 있는 정신 질환자의 퇴원등의 여부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, 퇴원등이 예상되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・거주와 치료・재활등이 통합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

회 통합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 역사회 거주·치료·재활 등 정신질환자에게 임대주택 지원, 통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 역사회에 복귀 또는 거주하는 자립생활정착금 지원, 임차자금 지원, 단기거주 주거지원, 지역 사회 복지시설 연계 등의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 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자립적 이고 안정적으로 복귀 또는 거 주할 수 있도록 동료지원인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 른 지역사회 복귀 및 거주를 위한 통합 지원에 필요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37조의2(주간활동지원) ①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 의 주간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 하기 위하여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주간활동서비 스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38조(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정신 질환자의 적절한 회복과 자립 해당하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. 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 보와 교육의 내용・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한다.

- 제38조(가족 등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
 - 1.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제공 및 교육 지원
 - 2.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역량강 화 지원
 - 3. 가족 돌봄 및 휴식 지원
 - 4. 가족 자조모임 지원
 - 5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질환자 가족을 위하여 필 <u>요하다고 인</u>정하는 활동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 의 실시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에 위탁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・ 방법 • 절차, 제2항에 따른 위탁 방법 ·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